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
(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5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22. 7. 11. 개정, 2023. 4. 1.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라. 민원실의 설치 등(안 제4조)
- 마. 민원실의 휴무 및 연장 운영(안 제5조부터 제6조)
- 바. 민원상담관의 위촉 등(안 제7조)
- 사.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4. 관계법령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 3, 제9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22. 7. 11 개정, 2023. 4.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2023. 3. 10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
-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18748호, 2022. 1. 11., 타법개정]

제12조(민원실의 설치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3. 4. 1.] [대통령령 제32789호, 2022. 7. 11., 일부개정]

제8조의3(민원실의 운영)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7. 11.]

제9조(민원실)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>

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·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·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